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3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4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7
3. 총괄 검토	13
4. 조문별 검토	16
가. 제명 및 총칙(제1장)	16
나. 무역기술장벽 대응 종합계획(제2장)	25
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질의처 설치·운영(제3장)	32
라.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제4장)	51
마. 보칙(제5장)	73
바. 부칙	77
※ 참고자료	78
1. 세계무역기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개요	78
2. 무역기술장벽협정 제2.9조 및 제5.6조 내용	81
3. 무역기술장벽종합지원센터 개요	82
4.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개요	83
5. 2024년 무역기술장벽통보 주요 현황	84
6. 제정안 비용추계서 요약	8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30.
3. 회 부 일 : 2025. 5.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기술규제의 도입으로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문서의 건수는 4,337건으로,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정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재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고,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는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부설조직으로 설치되어 공공성 담보에 한계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 원활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기술규제 제·개정 시 통보문 등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무역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사. 정부는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의

실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둠(안 제22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무역기술장벽(TBT)¹⁾을 양산하고 있으므로²⁾,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무역기술장벽(TBT) 유형]

순번	유 형
1	일치화되지 않은 표준
2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3	적합성평가 절차의 중복
4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5	관료주의적 절차
6	외국의 유사인정 불인정 등
7	수입국에서 적용되는 민간 임의표준에 대한 인증 없는 시장 진입 불가 경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우리 기업의 제품이 해외기술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수출이 중단되므로 정부가 해외의 기술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기

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기술규제를 적용하여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국가표준기본법」은 무역기술장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1. (생략)

22. “무역기술장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가. 포장·표시·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한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나. 가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한 절차

2) TBT통보(건) : ('95)389 → ('10)1,869 → ('15)1,977 → ('20)3,352 → ('23)4,079 → ('24) 4,337

업에 제공하고 해외의 불합리한 기술규제가 있으면 협상을 통해 해외 기술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1개³⁾의 조문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기술규제 내용의 세계무역기구 통보, 회원국에 대한 질의 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각 부처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규제가 만들어져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가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사전적으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술규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

3)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역기구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사전적으로 회원국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분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미 시행 중인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 2건이 제21대국회에 발의되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제21대국회 심사 경과]

법률안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안일	심사결과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한무경의원	2122027	2023.5.16.	임기만료폐기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의원	2122940	2023.6.29.	임기만료폐기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총 5장, 2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제2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종합계획, 제3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질의처 설치·운영, 제4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체계]

구 분	조문(조제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적용 제외)
제2장 무역기술장벽 대응 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제3장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질의처 설치·운영	제8조(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 제9조(통보문의 제출 등) 제10조(회원국의 질의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제12조(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 제13조(무역영향분석 등)

구 분	조문(조제목)
제4장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제14조(실태조사 등) 제15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6조(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17조(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제20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제2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22조(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 제23조(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제5장 보 칙	제24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2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중
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⁴⁾(이하 “무역기술장벽협정”)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할 수 있도

4) 세계무역기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개요는 참고자료 1 참조

록 함(안 제8조).

셋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의 제정·개정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문서(이하 “통보문”)와 제정·개정하려는 국내기술규제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넷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보문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조치 내용을 해당 회원국에 회신하도록 함(안 제10조).

다섯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무역기술장벽협정의 협상, 이행, 운영의 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여섯째,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국내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

석(이하 “무역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일곱째,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

끝으로, 매년 6월 25일을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로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한편,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054호)이 2024년 10월 30일에 발의되어 현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제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두 제정안은 모두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질의처 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사업 추진, 무역영향분석 실시,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와 내용이 대체적으로 유사함.

주요 차이점으로는 ① 허성무의원안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이종배의원안은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의 수립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종배의원안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허성무의원안은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비교]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적용 제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적용 제외)
	제2장 무역기술장벽 대응 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제2장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질의처 설치·운영	제3장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질의처 설치·운영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6조(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 제7조(통보문의 제출 등) 제8조(회원국의 질의에 대한 조치 등) 제9조(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제10조(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	제8조(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 제9조(통보문의 제출 등) 제10조(회원국의 질의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제12조(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 제13조(무역영향분석 등)
제3장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문화	
제11조(무역영향분석 등) <u>제12조(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문화 계획의 수립 등)</u>	
제4장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제4장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제13조(실태조사 등)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5조(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16조(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8조(국제 교류·협력 등)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u>제20조(전담기관의 지정)</u>	제14조(실태조사 등) 제15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6조(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17조(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u>제19조(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u> 제20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제2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u>제22조(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u> <u>제23조(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u>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u>제21조(청문)</u>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2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2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 총괄 검토

현재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국내기술규제 내용의 세계무역기구 통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각 부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함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제정안은 ① 국제조약인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국가표준기본법」과 무역기술장벽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③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 중인 내용을 법제화하는 사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 내용 현황]

조문(조제목)	절차적· 실무적 내용	「국가표준 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무역기술 장벽협정에 규정된 내용	법적근거 없이 현재 시행 중인 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적용 제외)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제8조(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	○		○	○
제9조(통보문의 제출 등)	○		○	○
제10조(회원국의 질의에 대한 조치 등)	○		○	○
제11조(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
제12조(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		○		
제13조(무역영향분석 등)			○	
제14조(실태조사 등)				○
제15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16조(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7조(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 훈련 및 홍보)		○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9조(중소기업의 무역기술 장벽 대응 지원)				
제20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	○	
제2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제22조(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				
제23조(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제24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2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무역기술장벽 대응과 관련하여, 제정안과 같이 단독 법률을 제정한 해외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EU의 경우에는 「기술규

정 분야의 정보 및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칙 제정 절차 수립에 관한 유럽 의회·이사회 지침」으로 기술규제 제·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무역협정법」과 「행정절차법」에서 표준 관련 활동에 관한 미국 의무, 연방기관의 기능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무역기술장벽 대응 관련 해외 입법례]

구분	내용
EU	○ 「기술규정 분야의 정보 및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칙 제정 절차 수립에 관한 유럽 의회·이사회 지침」 시행 ('15.9) - 회원국의 제품·서비스에 관한 기술규제 제·개정 절차 규정 - 기술규정 수립에 관한 각 회원국 정책 관련 투명성의 보장 요구 - 제품의 기술규정으로 인한 무역장벽은 필요 요건 충족 및 공익목적의 경우에만 허용
미국	○ 「무역협정법」 제4장 무역기술장벽(표준) - 표준 관련 활동에 관한 미국 의무 및 연방기관의 기능 등 ○ 「행정절차법」 제4장 무역기술장벽(표준) - 연방기관의 규칙 제정 시 정보 공개와 이행 절차 규정

다음으로, 제정안(제13조)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무역영향 분석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내 관련 부처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총칙(제1장)

제정안 총칙(제1장)은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적용 제외를 규정하는 내용임.

1) 제명

이종배의원안은 법률의 제명을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허성무의원안은 법률의 제명을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제명)]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무역기술장벽 <u>대응</u> 에 관한 법률안	무역기술장벽 <u>대응 및 지원</u> 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의원안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법률의 주요 의의로 보고 제명에 담은 것으로 보이고, 허성무의원안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근거 마련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다만, 허성무의원안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도 있으나⁵⁾, 주된 입법목적이 특정 산업, 지역·지구, 계층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명에 “지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목적(안 제1조)

두 건의 제정안은 모두 법률의 목적을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목적)]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종배의원안은 제3장 2개의 조문에서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

5) 제19조(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제20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제22조(무역 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

준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허성무의원안은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장이나 조문이 없으며,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14조(실태조사 등) 2개 조문에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될 사항 중 하나로 각각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⁶⁾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관한 사항을 목적 규정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정의(안 제2조)

두 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무역기술장벽협정, 국내기술규제, 성문표준, 계약상대국, 자유무역협정 및 적합성평가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6)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무역기술장벽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역기술장벽 관련 민간기관·단체 및 정부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7.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의 협상에 관한 사항
9.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10. 무역기술장벽 관련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의 협상에 관한 사항
11. 무역기술장벽 관련 실태조사 및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국내기술규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략)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정안 조문대비표(정의)]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을 말한다. 2. “무역기술장벽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3. “국내기술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품·서비스·시스템 등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기준[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법령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공고, 훈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기술규정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4. “성문표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성문표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을 말한다. 2. “무역기술장벽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3. “국내기술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품·서비스·시스템 등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기준[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법령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공고, 훈령 등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기술규정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4. “성문표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성문표준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을 말한다. 5. “체약상대국”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을 말한다. 6.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이나 지역무역연합체와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을 말한다. 7.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말한다. 8.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을 말한다. 5. “체약상대국”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을 말한다. 6.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이나 지역무역연합체와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을 말한다. 7.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종배의원안은 별도로 적합성평가기관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허성무의원안은 적합성평가기관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제11조에서 약칭하고 있음. 적합성평가기관은 각각 부문에서 한 번만 사용되고 있으므로⁷⁾,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해당 조항에서 약칭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7) 이종배의원안의 경우 제9조제1항제4호, 허성무의원안의 경우 제11조제1항제4호

4)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두 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기술규제가 무역기술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국가 등의 책무)]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기술규제가 무역기술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기술규제를 제정·개정할 경우 해당 기술규제가 과학적 합리성을 유지하되,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기술장벽을 축소하기 위한 모범규제관행(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의 투명성·개방성·비차별성, 불필요한 무역 제한의 회피, 국제적으로 조화된 조치의 사용, 동등성의 인정, 경쟁정책의 적용 등 무역 관련 주요 원칙, 관행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기술규제가 무역기술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기술장벽을 축소하기 위한 모범규제관행(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의 투명성·개방성·비차별성, 불필요한 무역 제한의 회피, 국제적으로 조화된 조치의 사용, 동등성의 인정, 경쟁정책의 적용 등 무역 관련 주요 원칙, 관행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등을 말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공유·교환·전파 및 정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을 말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공유·교환·전파 및 정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 등을 부여할 경우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두 건의 제정안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기술장벽 <u>대응</u>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기술장벽 <u>대응 및 지원</u>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련된 여러

개의 개별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문임.

제정안의 규정 방식은 제정안에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허성무의원안의 경우 법률 제명에 “지원” 문구를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지원” 문구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6) 적용 제외(안 제5조)

두 건의 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 대하여는 제2장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적용 제외)]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5조(적용 제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 대하여는 <u>제2장</u>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 제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 대하여는 <u>제3장</u>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협정(제1.5조)은 “이 협정의 규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에 정의되어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무역기술장벽협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무역기술장벽협정(제1.5조)]

제1조 일반규정

1.5 이 협정의 규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에 정의되어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무역기술장벽 대응 종합계획(제2장)

제정안 제2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

허성무의원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무역기술장벽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역기술장벽 관련 민간기관·단체 및 정부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7.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의 협상에 관한 사항
9.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허성무의원안

10. 무역기술장벽 관련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의 협상에 관한 사항
 11. 무역기술장벽 관련 실태조사 및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국내기술규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종합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표준기본법」 관련 규정]

-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4.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표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7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 7의3.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 7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과 별도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은 종합계획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연도별·단계별 등으로 구분하여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의 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안 제6조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국가표준기본계획과 달리, 제정안의 종합계획 수립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⁸⁾.

또한, 제정안에 따라 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부칙 개정을 통해 「국가표준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안 제7조)

제정안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

허성무의원안
제7조(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①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8)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허성무의원안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제도의 개선
3. 무역기술장벽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는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표준심의회는 심의사항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국가표준기본법」 관련 규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유지·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
 2. 국제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3.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업무의 조정
 4.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5.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6.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
 - 6의2.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 6의3. 교정·인증·시험·검사 등 적합성평가의 중복 해소에 관한 사항
 - 6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장
 4. 표준과학기술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⑦ 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⑧ 심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심의회는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따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법·제도의 개선, 관련 부처간 협력·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 관련 사항의 심의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⁹⁾은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국가표준심의회를 활용하거나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부칙 개정을 통해 「국가표준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질의처 설치·운영(제3장)

제정안 제3장은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통보문의 제출, 회원국 질의에 대한 조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 및 무역영향분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안 제8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기술장벽협정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6조(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협정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기술장벽 질의처(이하 “질의처”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질의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기술규제의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통보 2. <u>세계무역기구 회원국</u> 이 무역기술	제8조(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협정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기술장벽 질의처(이하 “질의처”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질의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기술규제의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통보 2. <u>세계무역기구 회원국</u> (이하 “회원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문서의 접수 및 보급 3.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국내기술 규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4. 특정무역현안(<u>세계무역기구 회원국</u>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회의에서 무역기술장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한 안전을 말한다)에 대한 대응 5.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회의 참석 등 무역기술장벽 해소 대응 6.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질의처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국”이라 한다</u>)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문서의 접수 및 보급 3. 회원국의 국내기술규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4. 특정무역현안(<u>회원국</u>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회의에서 무역기술장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한 안전을 말한다)에 대한 대응 5.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회의 참석 등 무역기술장벽 해소 대응 6.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질의처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협정(제10.1조)¹⁰⁾은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 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무역기술장벽 공식 질의처¹¹⁾를 운

10) 「무역기술장벽협정」

10.1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영하고 있음.

[주요국 질의처 지정 현황]

국가명	질의처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 표준총괄국 국가표준인증정보센터(NCSC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총국(DG GROW)
중국	해관총서 국제검사검역 표준 및 기술규정 연구센터
일본	외무성 경제사무국 국제무역과
독일	독일표준화기구(DIN)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통보문의 제출 등(안 제9조)

제정안은 ① 국내기술규제의 제정·개정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문과 제정·개정하려는 국내기술규제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안

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 ② (생략)

③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공식 질의처 운영

10. ~ 15. (생략)

제9조제1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보문 및 제정·개정하려는 국내기술규제의 내용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도록 하며(안 제9조제4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로부터 통보받은 통보문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음(안 제9조제5항).

[제정안 조문대비표(통보문의 제출 등)]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7조(통보문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의 제정·개정이 <u>세계무역기구 회원국</u>(이하 “<u>회원국</u>”이라 한다)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문서(이하 “통보문”이라 한다)와 제정·개정하려는 국내기술규제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국제표	제9조(통보문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의 제정·개정이 <u>회원국</u>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문서(이하 “통보문”이라 한다)와 제정·개정하려는 국내기술규제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국제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준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기관의 지침 및 권고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지침 및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적합성평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의 제정·개정이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을 경우 지체 없이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문 및 제정·개정하려는 국내기술규제의 내용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로부터 통보받은 제4항의 통보문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날부터 6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안전·보건,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하거	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기관의 지침 및 권고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지침 및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적합성평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의 제정·개정이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을 경우 지체 없이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문 및 제정·개정하려는 국내기술규제의 내용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로부터 통보받은 제4항의 통보문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날부터 6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안전·보건,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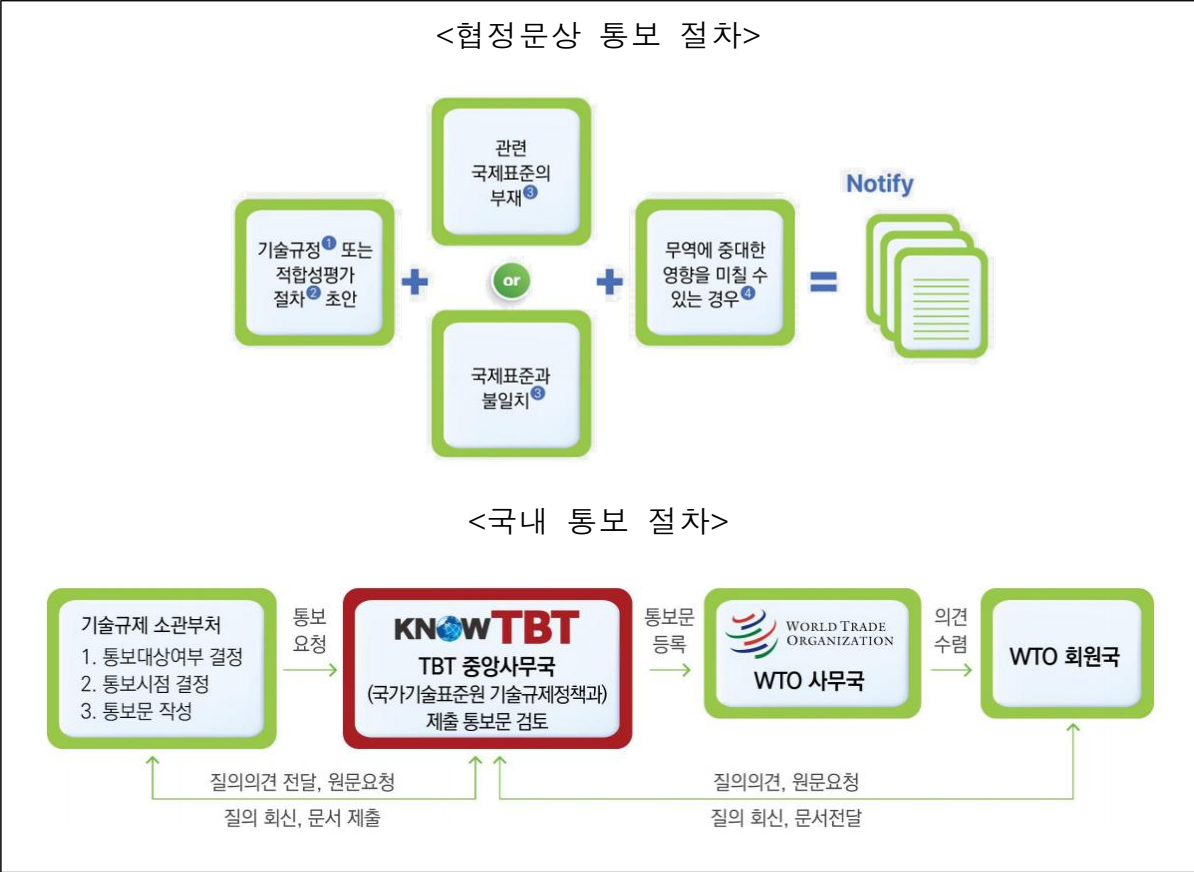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나 생략할 수 있다.	나 생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협정(제2.9조·제5.6조)¹²⁾은 회원국이 기술 규정, 적합성평가절차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 내용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때에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통보하고 다른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무역기술장벽협정 기술규제 통보 절차]

○ (목적) 관련 조치의 도입 및 변경에 대한 알림, 의견수렴을 통해 불필요한 무역상 장애를 변경 또는 철폐 ○ (대상) 모든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상품 무역에 적용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에 정의되어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는 적용 제외 ○ (내용) 규제명, 규제목적 및 내용, 의견제시 기간 등 ○ (시점) 제·개정 초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 초기 단계에 실시 * 채택 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 통보 필요
--

12) 참고자료 1. 무역기술장벽협정 제2.9조·제5.6조 참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현재 기술규제의 도입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통보문 현황]

(단위: 건)

구분 \ 연도	'20	'21	'22	'23	'24
전체 통보문	3,352	3,966	3,896	4,079	4,337
우리나라 기술규제 도입건수(a)	391	341	226	166	150
우리나라 통보건수(b)	70	116	74	68	58
a-b	321	225	152	98	92

주: 미통보건수(a-b)에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한 단순 미통보 외에 국내에만 기술규제가 적용된 경우, 무역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도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규제를 제정·개정할 때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과 통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를 제정·개정할 때 통보문을 제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기술규제가 무역기술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제9조제1항·제4항)의 내용과 「국가표준기본법」(제20조제2항)¹³⁾의 내용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13)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3) 회원국 질의에 대한 조치 등(안 제10조)

제정안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보문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질의를 받으면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조치 내용을 해당 회원국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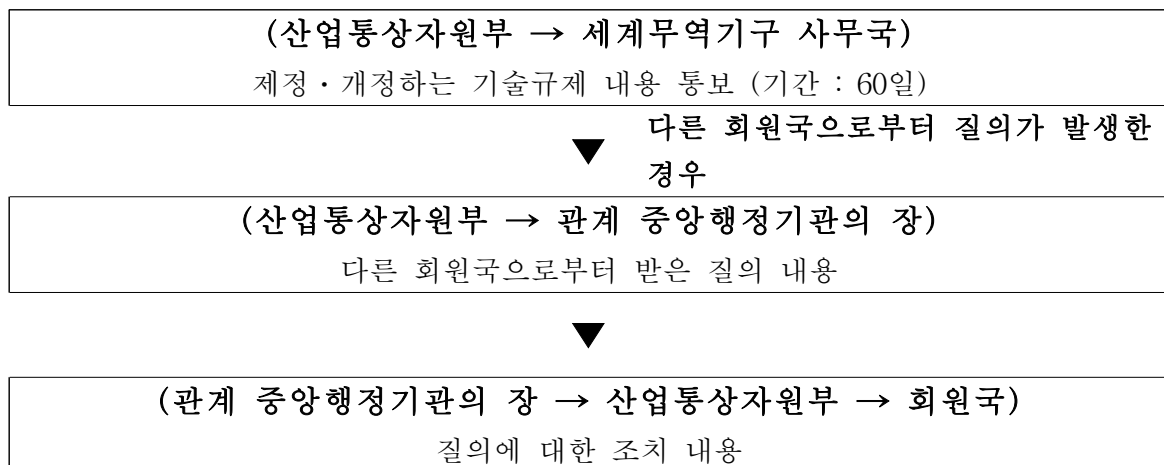
[제정안 조문대비표(회원국의 질의에 대한 조치 등)]

허성무의원안
제10조(회원국의 질의에 대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보문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 2. 관련 문서 및 정보의 제공 3. 통보문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내기술규제의 시행 유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질의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내용을 해당 회원국에 회신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의 질의를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

의 내용을 알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해당 회원국에게 회신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통보문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



4)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안 제11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협정의 협상, 이행 및 운영의 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9조(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	제11조(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장벽 대응)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협정의 협상, 이행 및 운영의 점검 2. 우리나라와 체결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의 개발·채택 및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의 및 산업계 지원 3. 우리나라와 체결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 관련 정보교환 4. 우리나라와 체결상대국 간 적합성평가 결과의 인정 또는 <u>적합성평가 기관</u>의 지정 요청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벽 대응)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협정의 협상, 이행 및 운영의 점검 2. 우리나라와 체결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의 개발·채택 및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한 양국 간 협의 및 산업계 지원 3. 우리나라와 체결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 관련 정보교환 4. 우리나라와 체결상대국 간 적합성평가 결과의 인정 또는 <u>적합성평가 기관</u>(「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적합성평가기관을 말한다</u>)의 지정 요청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중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그 밖에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그 밖에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정안은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항)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 부칙(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국가표준기본법」·제정안 무역기술장벽 대응사업 추진 관련 규정]

「국가표준기본법」	제정안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11조(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국가표준기본법」	제정안
· 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 · 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정의 협상, 이행 및 운영의 점검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의 개발·채택 및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의 및 산업계 지원 3.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 관련 정보 교환 4.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적합성평가 결과의 인정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요청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그 밖에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사업 개요]

□ 내역사업

①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 WTO 통보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우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통보문 입수 및 분석(기초분석 및 심층분석)을 통해 관련 규제내용을 수출기업에 전파
- 규제대상의 범위, 제개정 주요내용, 국가간 규제내용 과도성 비교,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 산업계 의견수렴(정부/TBT종합지원센터/업계/시험분석기관/업종별 협단체, 무역유관기관등)

②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 양자협상, 다자협상 및 타국 공조를 위한 전문가 협의 등
- WTO TBT 위원회(3,6,11월)에 참석, 다자협상을 실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FTA TBT 위원회(예: 한-중국, 한-베트남), 현지 규제당국 직접방문 등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 현안을 적기 해소

③ FTA TBT 협상 · 이행 강화

- 상대국의 규제현황, 법, 제도 및 기술규정 등을 분석
- 분석된 협상 당사국의 규제정보를 사용하여 협상시 우리 국익에 최대 반영

④ FTA TBT 종합지원

- 중국 및 베트남 등으로 수출 지원 확대
-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제품성능 규제 등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베트남, 인니, 인도 등 수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규제 및 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표준분석, 컨설팅 및 TBT 교육, 설명회 등 정보제공 필요

□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7,418	8,474	7,869	14,08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5)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안 제12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

허성무의원안
제12조(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제5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표준기본법」·제정안 협의회 관련 규정]

「국가표준기본법」	제정안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① ~ 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안은 부칙(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의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6) 무역영향분석 등(안 제13조)

제정안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에는 무역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무역영향분석의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무역영향분석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무역영향분석 등)]

허성무의원안
제13조(무역영향분석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내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하 “무역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무역영향분석의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무역영향분석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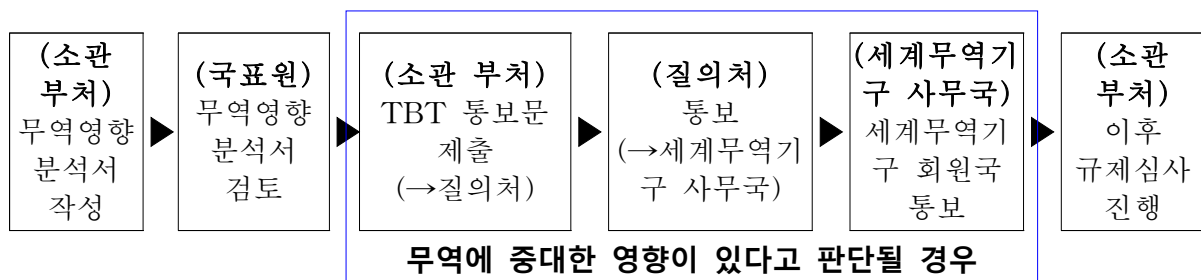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협정(제2.9조·제5.6조)¹⁴⁾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를 도입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는 부재한 상황으로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통보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무역기술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14) 참고자료 2. 무역기술장벽협정 제2.9조·제5.6조 참조

제정안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기술규제에 대한 무역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는 경우 국내기술규제 도입에 따른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계무역기구 TBT 전체 통보 절차(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중앙행정기관은 「행정규제기본법」 15)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

1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무역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무역영향분석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기술규제영향평가와 일부 중복되는 평가항목이 존재하여 행정효율 저하와 기술규제 주관부처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평가 요소를 상세히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작성지침, 운용요령 등을 별도로 고시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무역영향분석 작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무역영향분석 요소(안)]

1. 기술규제 신설·강화 근거의 타당성
2. 기술규제 대상·내용의 명확성
3. 다른 기술규제와의 중복성
4. 기술규제의 과잉성
5. 둘 이상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라.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제4장)

제4장은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실태조사 등(안 제14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실태조사 등)]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13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제1항에 따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제1항에 따른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 및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 및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경우 무역기술장벽대응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수립 및 업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지원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건의 제정안은 내용이 대체로 유사하나, 허성무의원안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안 제15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고, 통보문의 통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기술규제</u>·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u>기술규제</u>의 성문표준 인용 정보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고, 통보문의 통보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u>기술규제</u>·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국내기술규제</u>·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u>국내기술규제</u>의 성문표준 인용 정보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고, 통보문의 통보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u>국내기술규제</u>·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활용·관리 및 통보문의 통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기술 규제 대응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통보문의 통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허성무의원안은 “국내기술규제”에 관한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기술규제”에 관한 정보를 활용·관리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내기술규제”를 “기술규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3) 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안 제16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

허성무의원안
제16조(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부칙(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제1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수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무역기술장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국가표준기본법」 과 제정안의 출연 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정안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 9. (생략)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9의3. 제26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제15조(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정안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10. ~ 11. (생략)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안 제17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16조(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기술규제</u>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7조(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국내기술규제</u>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¹⁶⁾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중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43%에 불과하므로, 제정안에 따라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를 실시할 경우 기업의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허성무의원안은 “국내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기술규제”를 분석하여 이를 국내 기업에 대하여 교육·훈련과 홍보를 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내기술규제”를 “기술규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16)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3월 실시한 “수출 100대, 중소·중견 300대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43%이며, 소기업일수록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임.

5)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8조)

제정안은 정부가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의 실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전문인력의 양성)]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u>기술 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u> <u>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 장기 수급 전망 수립</u> <u>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u> <u>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u> <u>4.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 관련 교육의 지원</u> <u>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u>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u>국내 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의 실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할 경우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시험·검사, 표준·인증·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종배의원안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및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허성무의원안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6)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안 제19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

허성무의원안
제19조(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3월 실시한 “수출 100대, 중소·중견 300대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 기업의 67.3%가 해외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정보의 수집·제공, 컨설팅 등 지원은 제정안 제17조의 홍보, 교육·훈련 지원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7)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안 제20조)

제정안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개발도상국의 국내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국제협력)]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18조(국제 교류·협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도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도상

이중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국의 <u>기술규제</u>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의 <u>국내기술규제</u>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먼저, 제정안 제1항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이중배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허성무의원안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시행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 제2항의 개발도상국 지원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협정(제11.1조)¹⁷⁾은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규정을 준비하는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기술규제를 알리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17) 무역기술장벽협정

제11조 다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11.1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규정의 준비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한다.

다만, 허성무의원안 제20조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도상국의 “국내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모범규제관행으로 소개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규제 현황 및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내기술규제”를 “기술규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8)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21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사업 추진 및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민간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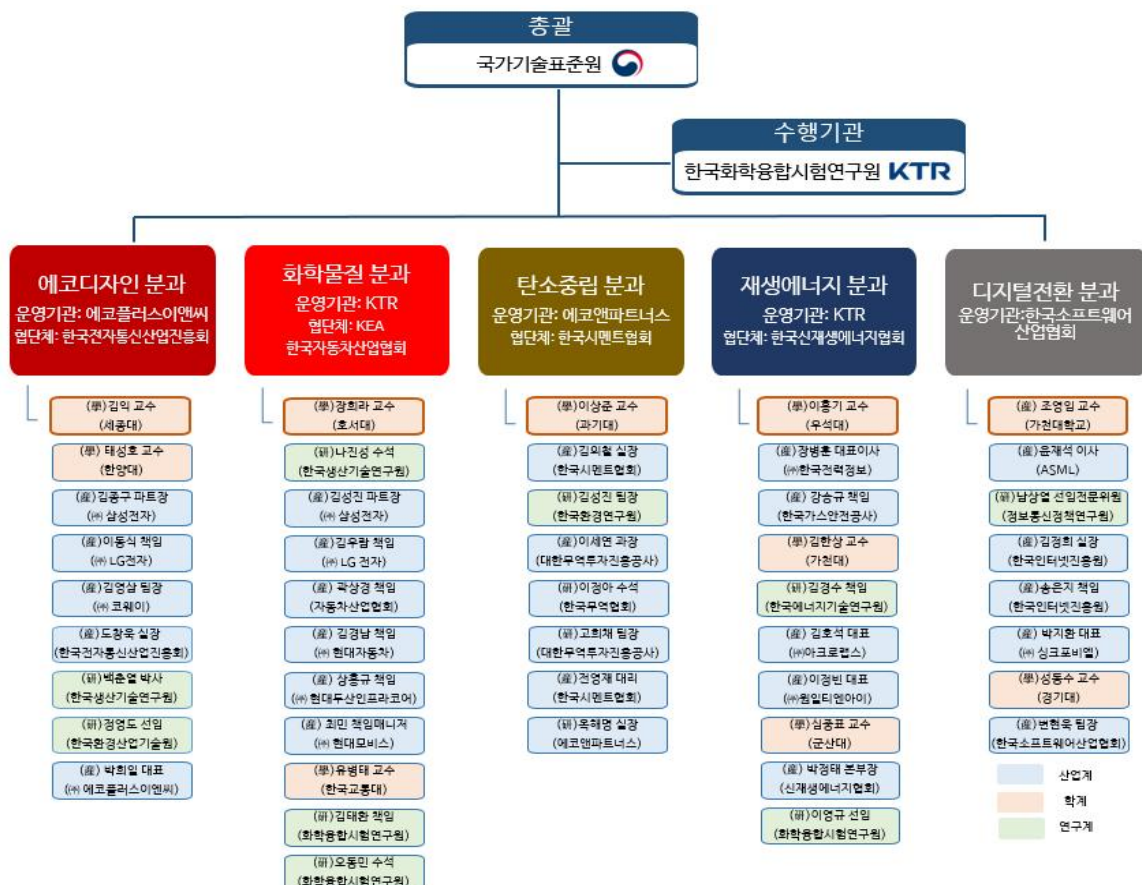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u>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최근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에너지

효율, 화학물질 등 신기술을 이용한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어 우리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빠르게 해외기술규제를 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3월부터 선제 대응이 필요한 5대 분야(에코디자인, 화학물질,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디지털전환)에서 전문가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무역기술장벽 대응 민간 협의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분야별로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종별 대표 협·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수출 품목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품목별 협의회 수행기관]

연번	담당 협단체	산업 분야	비고
1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대표협단체
2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협력
3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협력
4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협력
5	3D융합산업협회		협력
6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협력
7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KEAA)	기계·에너지 (자동차, 철도, 가스, 건축자재 등)	대표협단체
8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협력
9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협력
10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협력
11	한국전지산업협회		협력
12	한국철강협회		협력
13	해외건설협회		협력
14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협력
15	한국화학섬유협회(KCFA)	화학산업제품·섬유 (화장품, 완구 등)	대표협단체
16	대한방직협회		협력
17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협력
18	한국패션산업협회		협력
19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협력
20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협력
21	대한화장품협회		협력

연번	담당 협단체	산업 분야	비고
22	한국화학산업협회(KCIA)	화학소재 (플라스틱, 도료, 화장품 등)	대표협단체
23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협력
24	한국클로르알칼리협회		협력
25	한국비료협회		협력
26	한국작물보호협회		협력
27	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공업협동조합		협력
28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협력
29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협력
30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협력
3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협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및 품목별 협의회 등 민간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및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등으로부터 무역기술장벽 대응 관련 애로 사항과 정보를 청취하고 민관 국내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이종배의원안은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허성무의원안은 민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9)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안 제22조)

제정안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의 정관, 업무,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20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 ①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종합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종합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② <u>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u> 1. <u>국내기술규제 개선·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u> 2. <u>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현황 등의 자료 수집·조사·번역 및 분석 업무의 지원</u> 3. <u>제7조제3항에 따른 검토 업무지원</u> 4. <u>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u> 5. <u>제14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u> 6. <u>제16조에 따른 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등 지원</u> 7. <u>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u> 8. <u>제18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개발도상국 지원</u> 9. <u>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u>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u>	10. <u>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u> 11. <u>그 밖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u> ④ <u>종합지원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 ⑤ <u>종합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국내기술규제 개선·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u> 2. <u>국내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현황 등의 자료 수집·조사·번역 및 분석 업무의 지원과 관련 통계의 작성</u> 3. <u>제9조제3항에 따른 검토 업무 지원</u> 4. <u>제1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u> 5. <u>제15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u> 6. <u>제17조에 따른 국내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등 지원</u> 7. <u>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u> 8. <u>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및 개발도상국 지원</u> 9. <u>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관련 지원</u> 10. <u>그 밖에 종합지원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u> ⑥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u>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위에서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업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종합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종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에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¹⁸⁾¹⁹⁾.

제정안은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특수법인²⁰⁾으로 설립하여

18) 기존에는 시험기관,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매년 공모하여 운영하였으나,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사업관리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19)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 개요는 참고자료 3 참조

20)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출처: 국회 법제실, 법제기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이종배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허성무의원안은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는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조직으로 설립되어 독립법인, 설립등기가 부재한 상황으로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기보다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 업무는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시험인증 관련 업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성격의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²¹⁾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준과 실제, p.529, 2024.5.)

21) 회원사는 시험인증기관 및 기업 37개사로 구성,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개요는 참고자료 4 참조

10)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안 제23조)

제정안은 매년 6월 25일을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및 포상·표창 수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

허성무의원안
제23조(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① 국민에게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무역기술장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5일을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공적이 있는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포상·표창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고취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²²⁾에서는 국가 주

2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큰 날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등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되,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등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및 현재 “무역의 날”(12. 5.)²³⁾이 기념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을 매년 6월 25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은 무역기술장벽 대응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6.25전쟁일” (6. 25.)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 <p>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p> <p>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p> <p>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p> <p>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p> <p>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p> <p>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p> |
|--|

2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었고, 주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실시함.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무역의 날 행사를 통해 무역기술장벽 규제개선, 애로해소 및 해외인증 분야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지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마. 보칙(제5장)

보칙(제5장)은 국회에 대한 보고, 권한 등의 위임·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1) 국회에 대한 보고(안 제24조)

제정안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② 전년도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③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국회에 대한 보고)]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u>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u>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u>매년 6월 30일까지</u>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u>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u>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u>

먼저, 제정안 제24조제1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무역기술장벽 대응 관련 정책의 방향, 내용 등을 국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6월 무역기술장벽 현황 및 분석, 해외기술규제 동향, 주요 대응 사례 등을 담은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24조제2항은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의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가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현황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권한 등의 위임·위탁(안 제25조)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권한 등의 위임·위탁)]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2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

또한 무역기술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 등의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제정안과 같이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26조)

제정안은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의 임직원과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종배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2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종합지원센터의 임직원과</u>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정안과 같이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만,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⁴⁾.

24) 법무부는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이 파견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바. 부칙

제정안은 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제26조의2, 제27조제1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삭제하고 있음.

허성무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문이 다수 있다는 점, 무역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과 같이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제26조의2, 제27조제1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삭제하는 것은 삭제된 내용을 제정안 제15조제1항·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1. 세계무역기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개요²⁵⁾

가. 협상배경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은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 MTN (다자간협정) 중 하나로서 1980.1.1. 발효
 - 우리나라는 1980.10. 가입
- 기존 TBT 협정은 1) 협정 참여국들의 수가 미미(114개 GATT 회원국 중 38개국 가입)하고, 2)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TBT 협정 이행의무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3) TBT 협정의 적용 및 관할범위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 대두
- 불필요한 기술규정 등 표준화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본 협정의 기본정신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 15개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

2) 내 용

- TBT협정의 적용 및 관할 범위를 명확화 (제1조, 제3조 및 제4조)
 - 기존 TBT 협정이 협정 참여국간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PTA)인 데 비해 금번 협정은 다자간협정(MTA)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
 -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 농산물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은 새로이 제정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서 관할토록 이관
 - 「공정 및 생산방법 (PPMs)」 개념을 도입, 최종제품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도 TBT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
 -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제정, 지방정부기관 및 비 정부기관이 이를 통하여 TBT 협정을 이행토록 규정
- 기술규정 및 표준 제정의 일반원칙 명시 (제2조)

25)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외교정책-국제기구·지역협력체-WTO(<https://www.mofa.go.kr>)

-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
- 동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규제 불가(정당한 목적에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의 보호 등이 포함)
-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
- 국제표준과 다르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제정시 투명성 보장
-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및 표준 제정(제3-4조)
 -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제정시 상기 일반원칙을 준수토록 조치
 -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표준 제정시 「모범관행규약」을 준수토록 조치
-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 절차 (제5조)
 - 적합판정절차는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내산 동종상품보다 불리하지 않는 순서로 실시 및 완료
 - 적합판정절차의 표준 처리기간은 공표 또는 요청시 통보
 - 적합판정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 존중
-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의 인정 (제6조)
 -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다르다 하더라도 동 절차가 자국의 기술규정 및 표준과의 적합을 보장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 수용
-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제7-8조)
 -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도 중앙정부기관에 상응하여 상기 적합판정절차 및 타회원국 판정의 인정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
-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규정 (제10-11조)
 - 표준화 제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각 회원국은 문의처를 설치, 여타 회원국내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고 문서를 제공

- 국가표준기관의 설립 및 국제표준기관에의 참가에 관하여 특히 개도회원국에게 조언 및 기술지원을 제공토록 규정
- 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제12조)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의 준비 및 적용시 개도회원국 수출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개도회원국의 특별한 개발,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 고려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 설치 (제13조)
 -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적어도 1년에 한번씩 회합
- 분쟁해결절차의 통일 (제14조)
 - 기존 TBT협정은 협정 자체내에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었으나, 개선된 TBT 협정은 WTO의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 단, TBT 협정이 난해한 기술규정이라는 점을 감안, 패널 조사과정에서 기술전문가단의 조건을 얻도록 명시

다. 평 가

- 최종협정문은 상기와 같이 진전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협정의 성격은 불변
 - 즉, TBT 협정은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철폐(적극적 방법)가 아닌 통보 및 감시등 투명성 제고를 통한 표준 및 기술규정의 남용 억제(소극적 방법)를 계속 견지
- 종전의 TBT 협정은 복수국간 협정이었으나, 금번 WTO/TBT 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
- 「모범관행규약」의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표준제정시 TBT 협정 이행의무 확보

2. 무역기술장벽협정 제2.9조 및 제5.6조 내용

2.9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안된 기술규정의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회원국은,

2.9.1 자기가나라가 특정한 기술규정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초기 단계에 간행물에 공표하며,

2.9.2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제안된 기술규정의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술규정이 적용될 상품을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수정이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초기단계에 시행되며,

2.9.3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된 기술규정의 상세한 내용 또는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관련 국제표준과 실질적으로 일탈하는 부분을 밝혀야 하며,

2.9.4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결과를 고려한다.

5.6 국제표준기관에 의한 관련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기술적 내용이 국제표준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 및 권고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회원국은,

5.6.1 자기가나라가 특정 적합판정절차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초기단계에 간행물에 공표하며,

5.6.2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적합판정절차가 적용될 상품을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수정이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초기단계에 시행되며,

5.6.3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상세한 내용 또는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표준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실질적으로 일탈하는 부분을 밝혀야 하며,

5.6.4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자기가나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결과를 고려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 무역기술장벽종합지원센터 개요

□ 설립배경

- (대외여건) TBT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체계 고도화 필요
 - 선진국의 기술규제 복잡·정교화, 개도국의 TBT 통보문 증가 등 TBT 대응 업무량 증가
 - 대·중견·중소 기업군별 체감할 수 있는 TBT 서비스 품질의 개선수요 증가
- (대응역량) TBT대응 전담기관 육성의 필요
 - 그간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1년 단위 임시 조직으로 관리의 지속성, 전문 역량 확보에 한계
- (필요성) TBT활동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전문화된 전담지원 조직 필요
 - 기술규제 대응 및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하는 전담 상설조직 운영
 -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內 TBT종합지원센터를 출범('21. 1. 21)

□ 조직 및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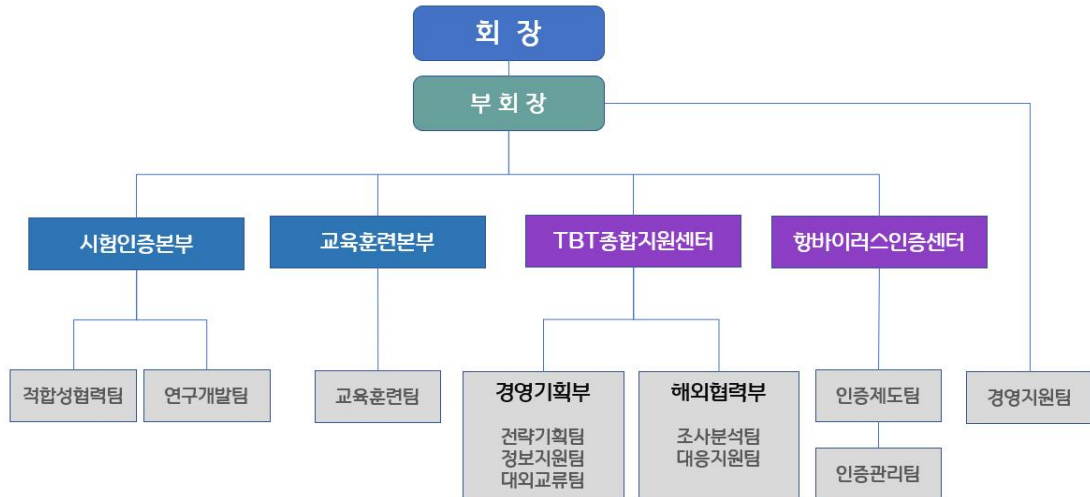
- (조직운영)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TBT 전담 상설조직으로 ①해외 규제 조사·분석, ②TBT대응 ③대외교류 ④정보지원 ⑤대외협력 등 분야별 전담 2부 5팀을 운영하고, 시험인증기관, 협회·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 (인력구성) 지원센터 내 전담인력(현재 16명)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시험인증기관, 협회·단체 등 사업 참여기관 인력(약 50여 명 참여)을 활용
- (예산출연) 정부예산 일반연구비(260-01), (08년~계속)를 사업출연금(350-02)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
 - 21년 27.96억, 22년 48.87억, 23년 58.86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4.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개요

□ 일반 현황

- [설립] 2011.8.29., [기관형태] 민법상 사단법인
- [회원사] HCT, 원택, Eurofins KCTL 등 시험인증기관 및 기업 37개
- [조직]



□ 인력 현황 ('25년) : 38명 (임원 1, 센터장 2, 부장 3, 팀장 2, 과장 2, 직원 28)

- [상근부회장] 1명
- [협회] 14명 (40%) (센터장 1, 부장 2, 팀장 1, 직원 10)
- [부설 TBT종합지원센터] 23명 (60%) (센터장 1, 부장 1, 팀장 1, 과장 2, 직원 18)

□ 주요 업무(정관 제4조)

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연구용역
2.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인증 관련 사업
4. 경영시스템 자격인증관련 사업
5. 시험인증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한 연구, 조사, 홍보 및 발간사업
6. 시험인증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7. 시험인증 관련 전시회, 박람회 사업
8. 시험인증 신뢰성향상을 위한 기술정보 수집·조사·분석 및 제공
9.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5. 2024년 무역기술장벽 통보 주요 현황

【 표1 연간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단위: 건) 】

연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통보건	4,337	4,068	3,896	3,966	3,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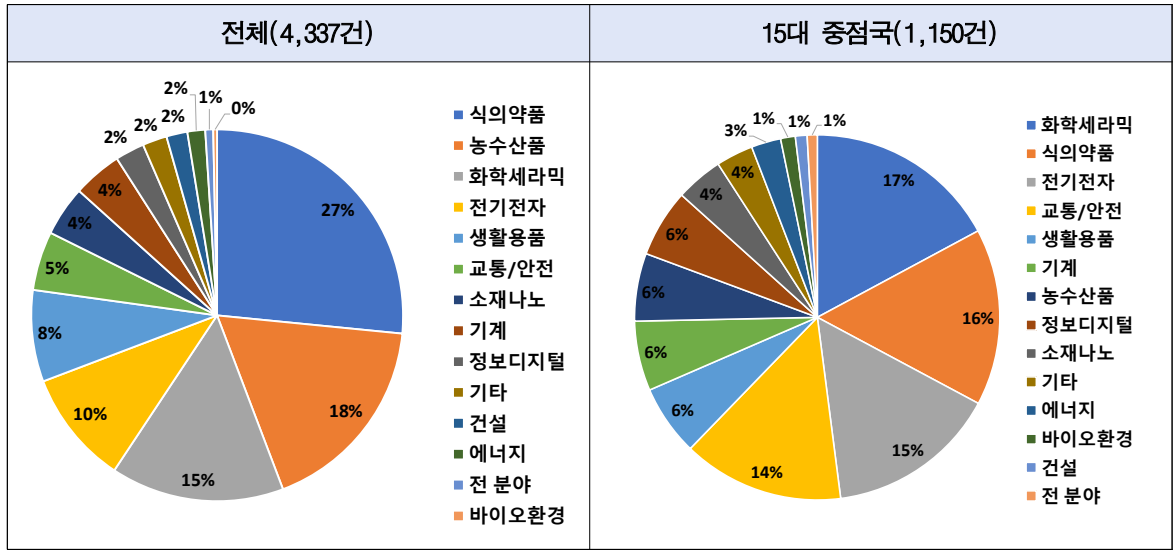
【 표2 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 (단위: 건) 】

국가	우간다	미국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	이집트	브룬디	브라질	중국	이스라엘
2023년	412	454	420	312	361	79	267	384	70	75
2024년	426	419	326	314	278	264	246	199	191	94

【 표3 15대 중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단위: 건) 】

10대 수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 (EU)	대만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023년	454	70	52	31	102	51	23	21	1	4
2024년	419	191	75	66	62	34	24	23	8	5
5대 신흥국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	러시아					
2023년	69	55	33	113	18					
2024년	78	65	51	36	13					

【 표4 산업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비중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년 무역기술장벽(TBT) 4,337건, 사상 최고치 경신, 2025.1.13.)

6. 제정안 비용추계서 요약²⁶⁾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안 제6조제1항), ②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안 제7조), ③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데(안 제23조) 소요되는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 9,000만원(연평균 9,8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무역기술장벽 대응 종합계획 수립 (안 제6조제1항)	35	—	—	—	—	35	7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3	3	3	3	3	15	3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기념행사 실시(안 제23조)	88	88	88	88	88	440	88
합계	126	91	91	91	91	490	98

-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6) 보다 세부적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의안정보시스템 비용추계서 원문 참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A5A0I4J2H3G0G9E0F5N0O7M4M6L6